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2차 교육위원회)  
2020. 9. 9.(수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최경천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8월 26일
- 회부일자: 2020년 8월 28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존중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민주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4조)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추진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(안 제6조)
-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(안 제7조)
-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 센터 설치(안 제8조)
-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·조사(안 제9조)
- 피해자 보호 조치(안 제10조)
- 신고자 등 보호 조치(안 제11조)
- 가해자에 대한 조치(안 제12조)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(안 제13조)
- 실태조사(안 제14조)

- 비밀누설 금지 등(안 제15조)
-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(안 제16조)
- 시행규칙(안 제17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상호 존중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었고, 안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을 정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센터 설치 및 인력 배치,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, 안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와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피해자 보호,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,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,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음.

- 안 제1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, 안 제1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업무 관련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음.
  
- 안 제16조에서는 충청북도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이 조례안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음. 이는 상위법령인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자를 ‘사용자’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,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을 준용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됨.
  
- 안 제17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,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21년부터로 하면서, 기존에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교육규칙이 존재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경과조치를 두었음.
  
-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, 교육공무직원 및 그 밖에 모든 인력들이 상호 존중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